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07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6. 17.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정 당시와 달리, 오늘날은 위치기반서비스는 교통, 배달, 금융, 전자상거래, 통신, 플랫폼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도 단독으로 처리되기보다 성명, 연락처, 단말기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음.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이동경로, 생활반경, 방문장소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임. 다만, 대량의 데이터가 결합·연계되어 처리되는 오늘날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일반적 처리절차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절차와 달리 별도로 규율할 실익이 크지 않음. 오히려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해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별도의 동의, 고지,

통지, 파기, 열람·정정·삭제 요구 절차를 두는 것은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2020년 2월 4일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규율을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으로 통합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이 추진되었음.

그러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파기, 정보주체 권리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음. 그 결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과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이용·제공의 제한, 처리방침 공개, 사업 양도 등의 통지,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인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7조의2·제18조·제21조·제21조의2·제22조 및 제23조 삭제 등).

Ⅲ. 검토의견

1.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에 따른 현행법 규정 삭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상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이용·제공의 제한, 처리방침 공개, 사업 양도 등의 통지 및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의2,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 제39조제2호부터 제4호, 제40조의2, 제41조제4호 및 제4호의2, 제4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4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2·제8호·제8호의2·제8호의3·제9호 및 제10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	<삭제>

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상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상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들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삭 제>

<u>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u>	
<u>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u>	<u><삭 제></u>
<u>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u>	<u><삭 제></u>
<u>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	
<u>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u>	
<u>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u>	
<u>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u>	
<u>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u>	
<u>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u>	
<u>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삭 제>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

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
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
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
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
간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
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
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
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
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
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
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

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
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3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
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
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
부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
보할 수 있다.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 <삭 제>
치정보 제공 등) ① 제19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
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
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
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 <삭 제>

· 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
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
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

<u>한 경우</u> <u>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u>	
<u>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u>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u> <u>2.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u> <u>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u> <u>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u> <u>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삭 제></u>
<u>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u>	<u><삭 제></u>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삭 제>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

제2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삭 제>

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④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 <삭 제>
치정보사업자들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8조제2항·제19조제5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

3.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5. ~ 6. (생략) <u>제40조의2(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u>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u> <u>4의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u> 5.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발송을 거부한 자	5. ~ 6.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41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5. (현행과 같음)
--	--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5.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 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7.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제43조(과태료)

①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②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7의2.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8.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8의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8의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삭 제>
9.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	<삭 제>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삭 제>
11. ~ 15. (생략) ③ ~ ⑧ (생략)	11. ~ 15.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규정 간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를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에 대한 감독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데이터 3법’¹⁾ 개정안이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되어 왔음.
- 개정안은 이러한 데이터 3법 개정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 일원화 취지에 맞추어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기 등 개인위치정보에 관하여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는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 제16조는 위치정보사업자등²⁾에게 위치정보에

1)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3개 법률을 통칭하여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고 함.

2)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를 “위치정보사업자”라고 약칭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 약칭하고 있음. 한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제1항)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의 기록·보존 의무(제2항)를 부과하며,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실태 점검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부여(제3항)하는 등 보호장치를 두면서, 그 의무의 대상을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위치정보에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의미하는 “개인위치정보” 외에도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인 “사물위치정보”도 포함됨.³⁾

편, 위치정보사업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3.(생략)

<현행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의 내용>

현행법 조문	현행법의 내용	개정안
제16조제1항	위치정보사업자등은 <u>위치정보</u> 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u>관리적 조치</u> 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u>기술적 조치</u>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제16조제2항	위치정보사업자등은 <u>위치정보</u>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제16조제3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u>위치정보</u> 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삭제

○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 제16조를 삭제할 경우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는 외에도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장치까지 일괄적으로 삭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즉,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대상인 개인정보⁴⁾에 해당되어 동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 규정이 적용되나,⁵⁾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물위치정보⁶⁾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현행법 제16조를 별도의 대체 규정 없이 삭제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위치정보인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의 근거까지 소멸되어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현행 보호조치 규정을 존치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 관련 규정들은 위치정보가 가진 실시간성·동태성이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들보다 강화된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동 규정들을 일괄 삭제할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⁷⁾에 대한 법적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19조제3항은 개인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때마다 제공받는 자·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예를 들어, 차량·드론·물류장비·로봇 또는 위치추적태그가 부착된 물건의 위치정보는 소유자·운전자·작업자 등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물위치정보에 해당함.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8),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제3자 제공 전에 정보를 제공받는 자·제공의 목적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제공이 이루어질 때마다 매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지 않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 제19조제3항을 삭제할 경우 매회 통보 의무가 소멸됨9).

- 또한, 현행법 제24조제2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일시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일시적 중지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중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도록 의무가 부과되는데 반하여10),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③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9)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¹¹⁾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¹²⁾,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 제24조제2항을 삭제할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보호가 현재보다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추가로, 현행법 제16조제2항¹³⁾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4조제3항¹⁴⁾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 수집·이

야 한다.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12)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용·제공사실 확인 자료 등을 열람하거나 고지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위 조항들을 삭제할 경우 사업자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 개인정보 열람권¹⁵⁾에 따라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위치정보의 처리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과 함께 위치정보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 규정을 삭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법적 보호 약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은 현행법 제16조, 제17조의2, 제18조부터 제21조, 제21조의2·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면서도 이들 조항을 인용하거나 전제로 하는 규정들을 개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삭제되는 조문을 인용하거나 준용하고 있는 다른 조문들(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1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제4항, 제27조, 제36조제2항·제4항, 제3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8조의3)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법률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서 정비하지 않은 연계조문>

연번	현행법상 잔존조문	인용·준용되는 삭제조문	연계 형태	현행법상 잔존조문에 대한 정비 필요사항
1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	인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로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6조 삭제 시 접근권한자의 근거와 범위가 불명확해지므로, 제6조제2항·제3항의 접근권한자 관련 규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제14조제1항 제1호	제16조제1항 · 제2항	인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기록·보존조치 위반을 과징금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의 근거인 제16조가 삭제됨.
3	제14조제1항 제2호	제18조제1항 · 제2항	인용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의무 위반을 과징금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의 근거인 제18조가 삭제됨.
4	제14조제1항 제3호	제19조제1항 · 제2항·제5항	인용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의무 위반을 과징금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의 근거인 제19조가 삭제됨.
5	제14조제1항 제4호	제21조	인용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한 행위를 과징금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의 근거인 제21조가 삭제됨.
6	제26조제4항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 24조	준용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준용 대상 조문이 모두 삭제됨. 보호의무자에 대한 동의·통지·권리행사 절차를 별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7	제27조	제16조·제17조 의2·제18조부터 제25조	인용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되는 제16조·제17조의2·제18조부터 제25조까지가 범위에 포함됨.
8	제36조제2항 후단	제16조제4항	준용	현장검사 공무원의 증표 소지·제시 절차를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이 삭제됨. 증표 제시의무를 제36조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함.
9	제36조제4항 후단	제16조제4항	준용	정기 실태점검을 위한 현장검사 공무원의 증표 소지·제시 절차를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이 삭제됨.
10	제38조제2항 제1호	제16조제3항	인용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권한의 근거인 제16조제3항이 삭제됨.
11	제38조제2항 제2호	제23조제3항	인용	개인위치정보 파기실태 점검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권한의 근거인 제23조제3항이 삭제됨.
12	제38조의3	제16조제1항 · 제3항	준용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점검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제16조 삭제 시 준용의 근거가 사라짐.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 마련이 필요함.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중검토

-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 제16조가 삭제될 경우, 규제 공백이 발생하여 국민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고, 보호와 활용 정책이 분산되어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으며,

개인위치정보를 일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규율할 경우 유출, 오·남용의 위험성이 더 높은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의

-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포섭되는 정보로서 동일·유사한 처리행위에 대해 별도 법률에서 동의·고지·통지·파기·열람 등 절차를 중복 규율하는 것이 수범자 혼란과 이중 규제를 초래하므로 위치정보법 중 개인위치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합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3)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신중검토

- 개인정보 보호법과 중복을 이유로 위치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핵심 보호장치를 일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4) 위치정보산업협회: 신중검토

- 사업자 부담 가중, 기관 간 중복 규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본질적 차이와 입법 목적의 차이, 산업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전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5) 인터넷기업협회: 신중검토

-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법체계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일부 행정처분의 수위가 강화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6) SK텔레콤: 신중검토

- 감독·규제기관이 이원화된다는 점, 위치정보법의 고유한 보호 법령이 소멸한다는 점, 제재 상한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7) KT: 신중검토

- 위치정보는 신산업의 중요 자원으로 일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규율할 경우 데이터의 결합·분석 활용이 위축되어 위치정보 기반 AI 산업 경쟁력 확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8) LG유플러스: 신중검토

- 위치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위치정보의 활용을 통한 산업적 이용·활성화까지 고려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28